

법령·제도개선 건의사항 목록

균형발전본부

총 2건 건의

목 록

연 번	건의 제목	건의 부서
1	집단취락지역 해제구역 연접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 완화	동북권사업과
2	국립공원계획 변경(해제 포함) 관련 타당성 검토시기 완화	동북권사업과

법령·제도개선 건의사항

건의 제목 (건의부서, 건의일자)	건의내용	소관부처
<p>1. 집단취락지역 해제구역 연접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 완화 (동북권사업과, '24. 3. 7.)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현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익성이 높은 시설의 설치 등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미 해제된 지역이나 기존시가지와 연접하여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대하여 20만제곱미터 미만의 규모로 개발 제한구역 해제가 가능하나, 기 해제된 집단취락지역과 연접하여 있으면 제외됨 <p><input type="checkbox"/> 문제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도봉구 화학부대 군이적지 경우 약 8년간 관리가 되지 않고 오랜 기간 방치되어 자연재해 및 우범화가 우려되어, 지역주민들이 공익성이 높은 시설 설치를 요구하고 있으나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불가함에 따라 어려움이 있음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건의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군이적지의 경우 기해제된 집단취락 지역과 연접할 경우에도 공공의 사업시행자(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지방공사)가 군이적지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GB해제가 가능하도록 지침 개정 건의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관련 규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·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3-2-1 	<p>(국토교통부)</p>

건의 제목 (건의부서, 건의일자)	건의내용	소관부처
<p>2. 국립공원계획 변경(해제 포함) 관련 타당성 검토시기 완화 (동북권사업과, '24. 3. 7.)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현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자연공원법 제15조에 따라 국립공원계획 변경(해제 포함)을 위한 공원계획의 타당성 검토시기가 10년 주기로 규정되어 장기간 소요됨 <p><input type="checkbox"/> 문제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립공원 내 군부대 이적지는 생활관, 훈련장, 관사 등 공원기능이 상실되어 있고, 주택가와 연결하여 국립공원 해제를 위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나 주기가 10년으로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재난 및 우범화 등으로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주민불편 초래 ※ 국립공원으로 기능을 상실한 도봉동 화학부대 군이적지 경우 '16년 이전 후 약 8년간 방치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건의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립공원으로서 기능이 상실되어 준치 필요성이 낮은 군이적지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립공원계획 변경(해제 포함)을 위한 타당성 시기를 5년으로 단축하여 일반공원과 같이 운영토록 법 개정 건의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관련 규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자연공원법 제15조 제2항 	<p>(환경부)</p>